

의안번호	2206267
의 퇴 인	윤재옥의원
회 답 일	2025.2.17
추계번호	24B5730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 (재정 지원)	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함(제2항) <u>4의2.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(신설)</u>	재량규정
		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<u>3. 제5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(신설)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서 시·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0조제2항제4호의2)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의 매표수입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를

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0조제4항제3호)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시·도의 매표 수입 감소분¹⁾ 보전과 관련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기준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, 국가의 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분 보전 사업 소요비용 지원과 관련한 지원 기준과 내용, 규모 등이 확정되어야 함
- 그런데 개정안은 시·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매표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, 상환 기준 등을 해당 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국가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불확정적인 상황으로 현시점에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1) 국토교통부는 2024년 “여객자동차터미널 수익성 개선 및 기능유지를 위한 표준사업모델 마련연구”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인 상황임, 다만,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 시외·고속버스터미널 매표수입은 2019년 1,720억원에서 2024년 1,339억원으로 연평균 4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, 2019년 이용건수는 16.5만건에서 2024년 10만건으로 연평균 9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